

[별표 3]

과징금의 금액(제26조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제25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의 기간에 나목 또는 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.
- 나.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당해 제조소등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 2호가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. 이 경우 연간 매출액은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, 신규사업·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·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매출액을 환산한다.
- 다. 연간 매출액이 없거나 연간 매출액의 산출이 곤란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(지정수량의 배수)을 기준으로 하여 제2호 나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.

2. 과징금 산정기준

- 가.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

등급	연간매출액(단위 : 원)	1일당 과징금의 금액(단위 : 천원)
1	1억 이하	30
2	1억 초과 ~ 2억 이하	50
3	2억 초과 ~ 3억 이하	70
4	3억 초과 ~ 5억 이하	120
5	5억 초과 ~ 7억 이하	160
6	7억 초과 ~ 10억 이하	200
7	10억 초과 ~ 13억 이하	240
8	13억 초과 ~ 16억 이하	280
9	16억 초과 ~ 20억 이하	320
10	20억 초과 ~ 25억 이하	360
11	25억 초과 ~ 30억 이하	400
12	30억 초과 ~ 40억 이하	440
13	40억 초과 ~ 50억 이하	480
14	50억 초과 ~ 70억 이하	520
15	70억 초과 ~ 100억 이하	560
16	100억 초과 ~ 150억 이하	600
17	150억 초과 ~ 200억 이하	640
18	200억 초과 ~ 300억 이하	680
19	300억 초과 ~ 400억 이하	720
20	400억 초과 ~ 500억 이하	760
21	500억 초과 ~ 600억 이하	800
22	600억 초과	840

나.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

등급	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(지정수량의 배수)		1일당 과징금의 금액 (단위 : 천원)
	저장량	취급량	
1	50배 이하	30배 이하	30
2	50배 초과 ~ 100배 이하	30배 초과 ~ 100배 이하	100
3	100배 초과 ~ 1,000배 이하	100배 초과 ~ 500배 이하	400
4	1,000배 초과 ~ 10,000배 이하	500배 초과 ~ 1,000배 이하	600
5	10,000배 초과 ~ 100,000배 이하	1,000배 초과 ~ 2,000배 이하	800
6	100,000배 초과	2,000배 초과	1000
비 고 1. 저장량과 취급량이 다른 경우에는 둘중 많은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. 2. 자가발전, 자가난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이표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을 과징금의 금액으로 한다.			